- (6) 밀폐공간에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7)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작업현황판 등을 게시하여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8)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밀폐공간 내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감시인은 즉시 구조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직접 구조를 위해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조치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10)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사다리,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대피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취약시기별 재해 예방 조치사항

5.1 일반적인 안전조치

5.1.1 해빙기 · 장마철

- (1) 현장 주변의 일기예보 및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여 하다.
- (2)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균열, 공동,침하 등) 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사장 주변에 떨어짐 등 위험장소에 접근금지를 위한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